

---

**2013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신청요강**

---

**2013. 4.**

## 연구과제 신청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신청전 KRI에서 본인의 연구업적을 반드시 최신정보로 수정하세요.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http://www.kri.go.kr>) ▶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  
※ 연구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소속대학의 관련팀으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 온라인 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으며, 반영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함**
- KRI에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연구업적 등을 최신정보로 수정하고 정보 공개 여부는 반드시 공개로 설정
-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② 신청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온라인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자 성명, 소속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면 안됩니다.

###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서명 후 스캔하여 온라인 탑재하세요.

참여인력(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해당시), 연구보조원(해당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명하신 후 파일(PDF, HWP, DOC)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⑤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이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주요사항 요약 -

구분	2012	2013	비고
<b>지원예산</b>	① 총예산: 25,370백만원 - 신규: 5,441백만원(43과제) - 계속: 19,929백만원(154과제 내외)	① 총예산: 27,959백만원 - 소형신규: 1,989백만원(20과제 내외) - 중형신규: 600백만원(2과제 내외) - 계속: 25,370백만원(137과제 내외)	
<b>지원대상</b>	① 「학술진흥법」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①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b>지원규모 (연/과제당)</b>	① 소형단계내 : 연 100백만원 이내 ※ 소형3년차 ABD해외연수 선택시 25백만원 추가 신청 가능	① 소형단계내 : 연 100백만원 이내 ② 중형단계내 : 연 230백만원 이내 ※ 소(중)형3년차 ABD해외연수 선택시 25백만원 추가 신청 가능	
<b>지원기간</b>	① 소형단계 : 3년 ※ 최장 10년(3+3+4)	① 소형단계 : 3년 ※ 최장 10년(3+3+4) ② 중형단계 : 3년 ※ 최장 7년(3+4)	
<b>평가절차</b>	① 요건심사→전공평가(패널+면담) →종합평가	① 좌동	
<b>공모방식</b>	① 사회과학연구지원(SSK) - Top-Down의 지정 Agenda 85% 내외 선정 - Bottom-Up의 자유 Agenda 15% 내외 선정	① 사회과학연구지원(SSK) - Top-Down의 지정 Agenda 100% 선정	
<b>연구결과물 제출</b>	① 소형연구팀당 1년에 연구성과 업적비율 200% 이상	① 소형연구팀당 1년에 연구성과 업적비율 200% 이상 ② 중형연구팀당 1년에 연구성과 업적비율 400% 이상	
<b>추진일정</b>	① 신규 과제 - 3월 공고/6~8월 심사/9월 지원 - 연구개시 : 9. 1.	① 신규 과제 - 4월 공고/6~8월 심사/9월 지원 - 연구개시 : 9. 1.	

# - 차 례 -

<b>I.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b>	
■ 사업목적 .....	1
■ 지원근거 .....	1
■ '13 중점 추진방향 .....	1
■ SSK 연구센터 육성방안 .....	2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3
<b>II. 지원내용</b>	
■ 예산 .....	4
■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4
■ 지원유형 및 연구개시 .....	5
■ 사업단별 운영 내역 .....	6
<b>III. 신청</b>	
■ 신청자격 .....	13
■ 신청기간 및 방법 .....	17
■ 신청절차 .....	17
■ 신청 및 참여제한 .....	20
<b>IV. 평가 및 선정</b>	
■ 평가단계 .....	22
■ 평가항목 및 절차 .....	22
■ 선정 및 협약체결 .....	23
<b>V. 연구비 관리</b>	
■ 연구비 지급 .....	23
■ 연구비 관리 .....	23
<b>VI. 연구과제 관리</b>	
■ 평가유형 및 평가내용 .....	24
■ 보고서 제출 .....	27
■ 연구성과 관리 .....	30
<b>VII. 기타</b>	
■ 간접비 지급 .....	31
■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	31
■ 기타 참고사항 .....	31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	33
[붙임2~3] 2013 SSK 전략 Agenda .....	34
[붙임4~8] 평가항목 및 배점 .....	36
[붙임9] SSK 최종연구결과물 산정 비율표 .....	41
[붙임10] SSK 소형 연구계획서 양식 .....	42
[붙임11] SSK 중형 연구계획서 양식 .....	49
[붙임1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56
[붙임13]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FAQ .....	57

## 1. 사업목적

-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
- 국가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집단(Think Tank) 육성을 통해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시

## 2.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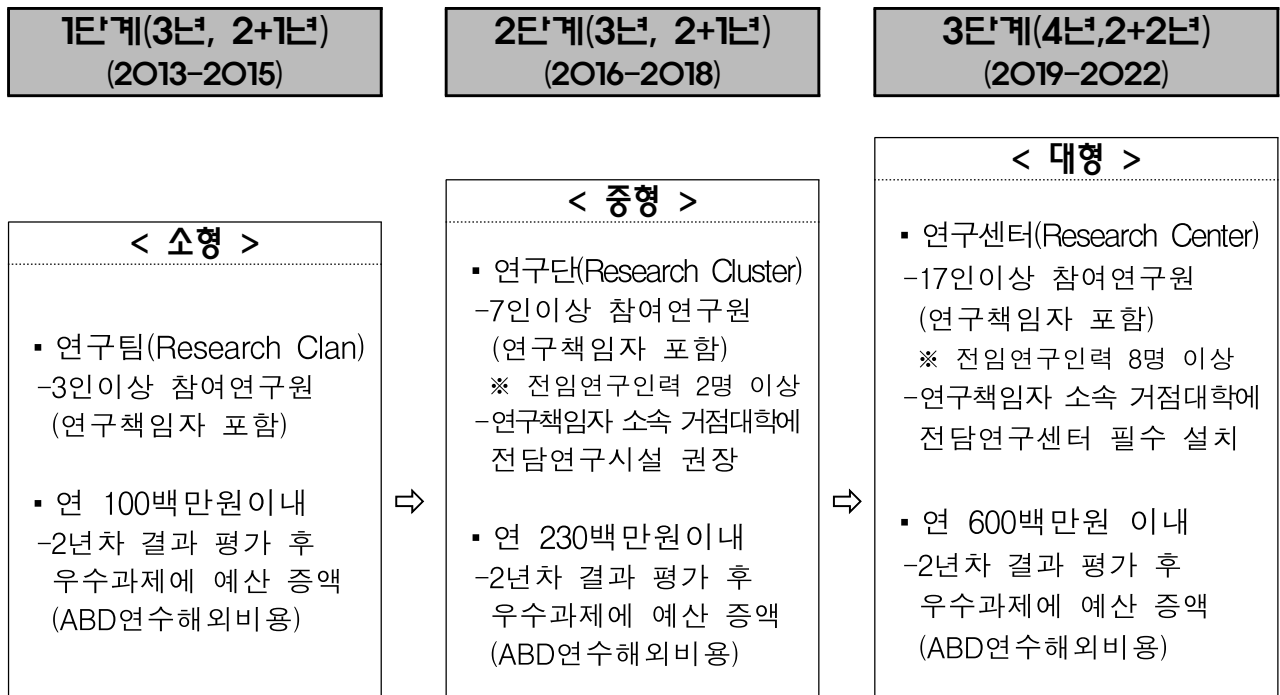
## 3. '13 중점 추진방향

- 사회과학연구의 사회적 적실성 제고를 위해 'Top-Down Agenda' 만 선정('12년 85% → '13년 100%)
- 학문간 융합, 국내·외 대학간 연구자 협력 연구를 활성화시켜 창의적, 생산적 연구 역량 창출 및 세계수준의 사회과학 연구 역량 증진
- 사회과학분야 연구 성과 활용·확산 시스템 정교화
  - 연구 결과를 부처 정책과 연계, 홈페이지를 통한 성과집적체제 마련, 우수 성과 언론보도 추진 등을 통해 연구 성과 공유 강화
  - SSK-Networking사업과 성과 홍보·확산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창출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SSK사업관리지침 제정, SSK사업관리위원회 및 SSK연구단협의회 운영 구성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시 연구성과의 질적수준을 고려 비율방식으로 추진
- 우수 연구성과 창출(국내외 Top 저널에 연구결과 발표) 유도를 통한 연구역량 제고

## 4. SSK '경쟁과 융합' 을 통한 연구센터 육성방안

- 소→중→대 단계적 성장을 통한 Agenda 중심의 융합연구 촉진
- 지속적으로 연차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서 탈락된 과제  
의 연구비를 우수 집단에 증액 배정하여 경쟁력 제고
  - 각 단계 2년 차 연차평가 시 하위 20% 내외 탈락
  - 각 단계 진입을 위한 단계평가를 통해, 이전 단계 연구팀·단 수의  
약 50%를 다음단계 단·센터 운영 목표치로 설정\*
    - ※ 모두 단독성장 팀·단으로 가정 시 최대 하위 50% 탈락 가능
- 학과, 대학 중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학문 분야 간, 대학 간, 국가 간 교  
류·융합을 촉진하여 개방적 연구 네트워크 형성 및 한국 사회과학 국제화
- 연구팀 간 자발적 교류연구 및 융합·소통 지원의 장을 제공하여  
자발적 융합을 통한 성장 유도
  - 중·대형단계 진입 시 신규 연구단(센터) 진입 일정비율 허용

### < SSK 연구집단 성장 모형(안) >



※ '13년 선정될 20개 소형 연구팀의 성장경로 예시

- 사회과학분야 Agenda중심의 융합연구를 위하여 3단계 육성전략 채택
  - (소형) 초기 3년간 사회과학 연구자의 광범위한 참여 촉진
  - (중형) 연구집단 간 경쟁과 융합으로 중규모 우수 연구거점 육성
    - ※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소형연구팀의 40% 내외가 중형연구단으로 성장
  - (대형) 소수 정예의 대형 연구중심 센터 지원 · 육성
    - ※ 소형연구팀의 15% 내외가 대형 연구중심 센터로 성장
- 지속적인 연차 및 단계평가를 통하여 우수 연구성과 창출 · 육성
  - 각 단계 2년차 연차평가 시, 하위 20% 내외 탈락
    - ※ 각 단계 1년차 연차평가는 컨설팅으로 실시(탈락없음)
  - 각 단계 진입을 위한 단계평가 시, 하위 50% 내외 탈락(연구팀, 단 기준)
- 중간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의 연구비를 우수집단에 증액배정하여 경쟁력제고
  - 단계를 거치면서 연구비, 연구인력 등 연구집단 규모 증대
    - ※ 새로운 연구자 보강, 박사수료생이 해외연수를 거쳐 전임연구원 등으로 성장하여 연구에 합류가능

## 5. 기대효과

-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을 통하여 미래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전략 아젠다(Top-Down Agenda) 장기연구로 세계적 경쟁력 확보

## 6.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2013. 1월	- 연구진행 관리
2013. 2월	- 연구진행 관리
2013. 3월	- 연구진행 관리
2013. 4월	- 2013년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사업공고
2013. 5월	- 신규과제 신청 접수
2013. 6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및 계속과제 신청접수
2013. 7월	- 신규 및 계속과제 선정(연차,단계)평가
2013. 8월	- 신규 및 계속과제 선정(연차,단계)평가
2013. 9월	- 신규 및 계속과제 연구개시
2013. 10월	- 연구진행 관리
2013. 11월	- 연구진행 관리
2013. 12월	- 연구진행 관리

## 1. 예산

(단위:과제/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비 고
소형 신규과제	1,989	20내외	
중형 신규과제	600	2내외	
계속과제	25,370	137내외	
<b>합 계</b>	<b>27,959</b>	<b>159내외</b>	

##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인문사회 분야
-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교원)에 한정함
  - ※ 단, 국공립대 기금교수의 경우 연구책임자로 참여 가능
  - ※ 참여연구자중 최소 1인은 인문사회과학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교원이어야 함
  - ※ 고등교육법 개정('11.7.21)으로 전임강사의 명칭이 폐지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로 봄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제 14조 (교직원의 구분)  
 ①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연구주제 : 지정[Top-Down] Agenda 중심 선정
  - Top-Down Agenda :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사회과학 장기 Agenda중심으로 신규과제 선정
  - ※ 사회과학 아젠다 개발 연구 및 학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
  - ※ 소형/중형 Mega-Agenda 세부 개요 : 붙임2, 3 참조



### 2013년 SSK 소형 7대 Mega-Agenda

- 지역사회 발전
- 복지와 행복
- 지역다양성과 사회통합
- 교육발전
- 융합적 학문과 기술
- 국제관계와 한반도 미래
-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 2013년 SSK 중형 4대 Mega-Agenda

- 지방화와 상생발전
- 삶의 질과 국민행복
- 미래지향적 교육/연구
- 창조경제와 국가경쟁력

## 3.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SSK 소형단계 (연구팀/공동연구)	연 100백만원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3년	
SSK 중형단계 (연구단/공동연구)	연 230백만원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3년	

#### SSK연구팀 구성 방안

- 학문 접근방식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해 학문간 융합연구 및 국내.외 대학 간 연구자 협력을 장려한다는 기본 취지는 살리되, 이 요건은 사업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주제나 여건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하되, 동일대학 동일학과 소속만으로 팀 구성을 자제하도록 하는 최소요건주의 방식으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요건을 강화함

※ 소(중)형 3년차 ABD 해외연수계획이 있는 경우 연수비용(25백만원) 추가(선택사항)

※ 소(중)형 3년차 ABD 해외연수비용은 연차평가시 탈락된 연구팀의 예산으로 증액되므로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4. 연구개시

- 연구개시일 : 2013년 9월 1일(소형/중형 신규 동일)

## 5. 사업단계별 운영 내역

### ○ 소형단계 사업운영

소형 : 연구팀 (Research Clan)	
단계별 목표	- 중장기 연구 방향 설정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한 기틀 마련
연구기간	- 3년(2+1)
연차 / 단계평가	- 1차년도 연차평가는 멘토링 개념으로 PASS/FAIL 없이 점수 부여 없음 - 2차년도 연차평가는 하위 20%내외 탈락 - 중형진입 단계평가 시, 하위 50%내외 탈락(개별연구팀 기준)
연구활동	- 연구기반 구축 및 기초연구 - 학문의 다변화에 따른 사회과학분야 학제간 연구 - 타학문 분야와의 교류 연계 활동
연구비	·연간 1억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3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공동연구원(일반공동연구원 + 전임연구인력) 2명이상 ※ 전임연구인력 의무 참여 없음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함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소형단계 3년차에 실시 ※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 6개월 이상 참여 의무 - 연수지원 기간 1년(2,500만원 이내) ※ 해외연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연수비 미지급 - 연수종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 제출

○ 중형단계 사업운영

중형 : 연구단 (Research Cluster)	
단계별 목표	- 집단연구 거점 형성 및 중장기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연구기간	- 3년(2+1)
연차 / 단계평가	- 1차년도 연차평가는 멘토링 개념으로 PASS/FAIL 없이 점수 부여 없음 - 2차년도 연차평가는 하위 20%내외 탈락(연구단 기준) - 대형진입 단계평가지 하위 50%내외 탈락(연구단 기준)
연구활동	- 연구 아젠다의 확장과 심화 - 사회과학분야 장기 응용연구 - 거점대학 연구시설 및 공간 확보
연구비	·연간 2.3억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 교내대응자금 투입 가능(최소기준 없음 : 평가지 반영) - 주관대학의 연구소 공간 지원 필수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7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공동연구원 6명 이상(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 - 행정지원인력(Staff) 1명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중형단계 3년차에 실시 ※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 6개월 이상 참여 의무 - 연수지원 기간 1년(2명X2,500만원 이내) ※ 해외연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연수비 미지급 - 연수종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 제출

○ 대형단계 사업운영

대형 :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단계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 수준 문제해결형 Agenda 특화 연구센터 육성</li> <li>-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Think Tank 기능</li> </ul>
연구기간	- 4년(2+2)
연차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차 이후 연차평가지 하위 10% 내외 탈락 가능</li> <li>- 사업종료후 대형연구센터 자생력 확보 방안</li> <li>※ 교내 및 기업체의 협력의지 / 성과확산 의지 명시</li> </ul>
연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성과 집약 및 확산을 통한 지식의 체계화</li> <li>- 차세대사회과학자 양성(연구거점)</li> <li>- 국내외 대학간 국제공동연구 및 학생교류</li> <li>- 필요시 한국사회 특정 Agenda분야 정책지원 공급 허브 육성</li> </ul>
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6억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li> <li>- 교내대응자금 투입 가능(최소기준 없음 : 평가시 반영)</li> <li>- 주관대학의 연구소 공간 지원 필수</li> <li>- 민간기업 대응자금(현물+현금) 투입 가능</li> <li>※ 최소기준 없음 : 평가시 반영(연구협력기관 명시)</li> </ul>
연구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연구원 17명 이상]</li> <li>- 연구책임자 1명</li> <li>- 공동연구원 16명 이상(연구교수급 포함 전임연구인력 8명 이상)</li> <li>- 행정지원인력(Staff) 1명</li> <li>※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li> </ul>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대형단계 2년차에 실시 가능</li> <li>※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 6개월 이상 참여 의무</li> <li>- 연수지원 기간 1년(1~2명X2,500만원 이내)</li> <li>※ 해외연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연수비 미지급</li> <li>- 연수종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 제출</li> </ul>

○ SSK 용어 정의 및 범주

- 'SSK'는 한국사회과학의 영어 표현인 'Social Sciences Korea'의 머릿글자를 딴 약칭임
- 'Agenda'는 사업 신청시 연구팀의 10년간의 중장기 연구의제를 의미하며, '연구과제'는 각 단계별(소형, 중형, 대형) 사업 신청시 제출된 단계내 연구주제를 의미함
- 소형단계의 '연구팀'(Research Clan)과 중형단계의 '연구단'(Research Cluster)은 연구소 설립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SSK 중형 신규 제외) 가능하나, 대형단계의 '연구센터'(Research Center)에서는 신청전 교(학)칙에 명시된 설립 근거에 의하여 연구소(센터)설립이 완료되어야 함
- 'SSK전임연구인력'은 중형단계부터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박사급연구인력을 총칭(總稱)하며, 중형(대형)단계는 2명(4명)을 필수 임명해야함
- 'SSK연구교수'은 대형단계부터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연구교수를 총칭하며 학술연구교수(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내)의 수준의 지위와 인건비를 지급받는 비전임교원을 의미함. 대형단계에서 4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2년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연단위 계약 가능)
- '컨소시움'(Consortium)은 중형 및 대형단계 진입시 유사 Agenda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의미함

○ 연구팀(단,센터) 간 연합 도모

- 학문 접근 방식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해 학문간·대학간·국가간 연구 영역의 자율적 연합을 권장
- ※ 3→4년, 6→7년차 단계 평가 이전 연구팀 간 연합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를 통해 단계 진입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단(센터) 구성
- ※ 장기적 발전가능성 및 우수 연구실적이 인정된 연구팀(단)은 단독선장도 가능  
(단독성장팀의 비율은 단계진입 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 2개 이상 연구팀(단)이 연합하고 연구팀(단)의 1/2 이상 참여할 경우 연합으로 인정하고 연구단의 총괄책임자는 소형 연구팀의 연구책임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소형 연구팀의 연구책임자가 반드시 연구단에 참여할 의무는 없음 ('10~'12년 선정 연구팀도 적용)

- 연구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되, 학문 접근방식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해 학문간·대학간·국가간 연구 장려
  - 해당분야 Agenda가 유사할 경우 선정년도가 다른팀(단)간 연합도 허용하되, 연구팀(단)의 논문제출 및 기타 의무사항은 연합연구단(센터)로 승계하며 선정년도 차이는 1년을 기준으로 함
  - 총괄 책임자의 소속 주관기관으로 간접비를 지급하되, 2개 이상의 연구팀(단)의 연합체일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세부책임자 소속기관별 간접비 배분이 가능함(간접비가 포함된 연구비 일부를 협력대학으로 이관)
  - ※ 중.대형단계 연합체 구성 이후에도 이전 단계의 연구방향 및 목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의 연속성 보장(세부책임자는 연합 이전 연구팀(단)의 연구책임자를 권장함)
  - 연합체(Consortium) 구성을 통한 단계 진입 시 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현황 보고서(Position Paper)를 연 1회 발간하여 연구팀간의 화학적 결합 유도(일반적인 운영상황 및 연구진행 상황, 성과·전망 등)
- SSK 연구팀(단)간 네트워크 강화
- 사회과학분야 연구의 융합과 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 여부에 관련 없이 연구팀 간 광범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 ※ 단독성장팀도 학문적 교류 차원에서 연구팀간 네트워킹에 참여 권장
  - SSK연구팀(단)간 자발적 교류협력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 지원 사업단 운영
  - ※ 네트워킹 참여 실적을 연차 및 단계평가 시 반영
- 연구 성과 활용·확산 시스템 정교화
- 국가 사회적 기여 및 반응을 위한 연구 결과가 정부정책 및 민간과 연계되도록 지원
  - ※ 연차 평가 항목에 연구자의 사회적·국가적 기여 노력을 반영

- 대중이 흥미를 가질 수 있거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연구 중 우수 사례를 발췌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간단한 안내책자로 배포
  - 주제별 기획 기사 시리즈 구성 등을 통해 우수성과에 대한 정기적 언론보도 추진
  - 연차/단계평가 항목에 연구자의 사회적·국가적 기여 노력을 반영
- ※ 평가지표에 참여자의 국내외 활동실적(강좌, 성과 발표, 학술포럼 등) 포함

○ SSK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관련

- SSK박사수료생(이하 “SSK연수생”이라 함)은 해외연수 이전 최소 6개월간 SSK연구소(연구팀·단·센터)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사람 중 선발
- 연수 기간은 1년으로 연장은 불가하고, 출국 후 1년간 30일 이상 국내체류를 불허\*

\* 연수자는 연수기간중 일시귀국과 조기귀국일자를 합하여 연간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 연수비를 다음에 의거 환수

● 일할 반납조치 : 일시귀국과 조기귀국 기간이 위의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일할 반납토록 함

● 전액 회수 : 무리한 일시귀국 또는 임의의 조기귀국 등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연구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 SSK연수생의 해외연수 종료 후 2년 이내 박사논문이나 한국연구재단등록지를 1편(주저자), 귀국후 6개월 이내 연구책임자에 결과보고서 제출

※ 출국 전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계획 및 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국 후 6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및 연수기관의 지도교수 의견서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

- SSK연구소는 SSK연수생 선발시 즉시 재단에 통보\*해야 하며 연차보고서 제출시 SSK연수생을 명시

\* SSK연구소 각 단계별 3년차 연구개시일 2개월 이전에 반드시 통보

- SSK연수생은 각 단계별 3년차 연구개시일 6개월 이내에 출국하고 국가별 차등 없이 연간 25,000천원 내외 지급

< 연수비 관리 사항 >

- SSK연수생의 해외연수 신청 후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할 경우 즉시 연수비용을 반납
- 단계내 연차평가 탈락팀의 잔여예산으로 연수비용이 지급되는 바 연수금액은 유동적이며, 연수대상자가 있는 연구팀에게만 연수비용을 지급함 (2011,12년 선정과제에도 적용하며 증액된 연구비에 비례하여 간접비 지급 예정)
- SSK연수생의 해외연수 신청이 저조하여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신규 및 계속과제 추가 선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연수계획변경 및 연수중단과 관련해서는 연구책임자의 승인 하에 증빙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즉시 제출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의 박사 후 국외연수 관리규정에 준용하여 처리

- 연수 중단시 연수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에 대한 연수비를 일할 계산 반납하고 중단일까지의 결과를 정리한 연수결과보고서를 연구책임자에 제출

※ 일시 및 조기귀국허용일수 산정기준일은 출입국사실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적용일수는 1~6개월은 15일간, 7~12개월은 30일간으로 함



## 1-1. 신청자격 : SSK 중형 신규

### 가. SSK 중형 신규 요건

- 대학의 총(학)장 추천을 받은 사회과학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사회과학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란 연구소 명칭이나 연구자의 전공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사회과학분야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하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의미함
  - 연구소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소 정관에 상기 내용을 연구소 목적(목표)으로 반영하여야 함
-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가 확고하고 구체적인 연구소 육성·지원 계획이 수립된 연구소
  - 독립된 전용공간을 지원(예정 포함)하고 전임연구인력을 확보(예정 포함)하고 있으며 전임연구인력의 지위향상 및 신분안정을 위한 인사정책을 확보한 연구소
- 연구소장 책임 하에 타 연구소와 차별되는 전문화·특성화 발전이 가능한 연구소로서 해당 대학 및 지역의 특성화 발전에 부합하여야 함
- 기존 연구소 기반을 토대로 연구 인프라(인력·시설 등) 확장, 학제적 연구, 학술적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소

※ 대학별로 1개 연구소만 신청 가능함

### 나. 연구과제·연구진 구성 요건

- 연구과제 구성 : 동일대학에서 1개 연구소만 신청 가능(연구소별 1개 총괄과제로 신청 / 세부과제 구성은 자율)
- 연구책임자 요건 : 신청 연구소의 소장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 연구책임자가 현재 소장이 아닌 경우도, 연구소 선정 후 3개월 내에 소장으로 취임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에 한함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대학에 소속되고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함

2008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이공분야 연구자는 5편 이상) 이어야 함**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 함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평가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에 입력하여야 함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제2조(정의)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 연구진 자격요건 및 구성기준

구 분	구성기준	연구업적 및 자격
연구책임자		■ 연구업적 3편 이상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연구소당 2명 이상
연구보조원		■ (전문)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 및 학사, 석사급 연구원

- 연구소장 :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소 기반 조성 및 특성화 발전, 인력양성 및 과제 진행을 관리함

※ 연구소장은 선도연구센터(ERC, SRC, MRC, NCR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인문한국(HK) 등 정부지원형 연구센터의 센터(소)장을 맡을 수 없음

- 일반공동연구원 : 연구소 소속의 대학교원(기금, 석좌, 객원교수 포함) 또는 박사급 연구원
- 전임연구인력 :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연구소 상근 연구자이어야 함(대학총장의 채용 발령)
- 신청시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은 확정된 상태이어야 하며, 전임연구인력 등은 연구소 선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확보하여야 함
- 연구소는 동 사업을 전담하는 행정요원 1명을 배치하여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하며, 전임연구인력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 다. 연구소 공간, 전임연구인력 인건비 등

구 분	기 준
공간(시설)	- 연구소 전용공간 49.5㎡ 이상 확보 -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1인당 4.95㎡ 이상 확보
전임연구인력	- 연 2,700만원 이상 지급

## 1-2. 신청자격 : SSK 소형 신규

### 가. SSK 소형 신규 요건

- 「학술진흥법」 제2조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되고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전임교원)이어야 함

2008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이 3편(이공분야 연구자는 5편 이상) 이상이어야 함**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평가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에 입력하여야 함
- 전임연구인력은 업적 요건 대상에서 제외함

○ 연구자 참여자격

구분		참여자격
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업적 3편 이상</li> </ul>
공동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 소지자</li> </ul>
연구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 및 학사, 석사급 연구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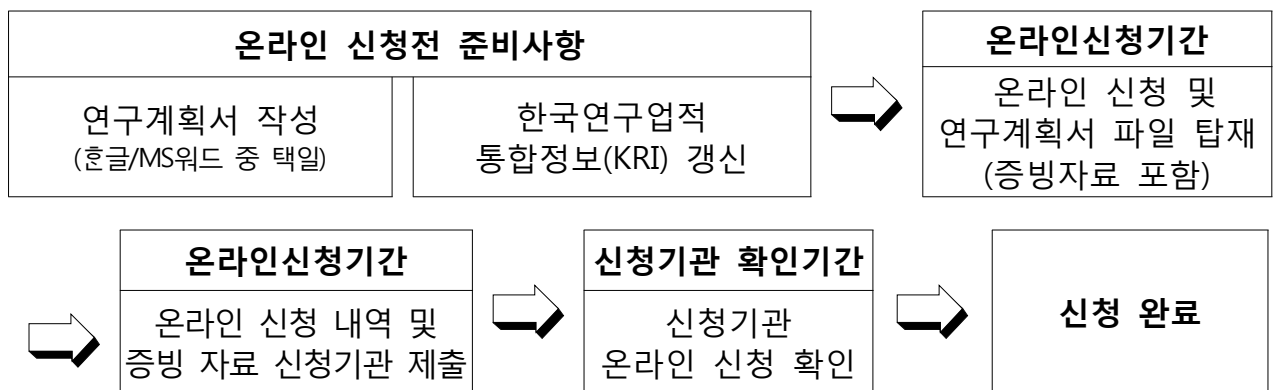
○ 연구진 구성조건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재단 연구분야 분류 기준. 여성학, 생활과학, 심리과학, 문헌정보학 등은 사회과학분야에 포함됨) 전임교원에 한정하며,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공동연구원은 최소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공동연구원의 전공분야(인문학, 예술학, 복합학, 이공분야 등) 제한은 없으며, 소형단계內에서는 전임연구인력 참여 의무 없음
- 전임연구인력이 참여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전임연구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
-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 전임연구인력 참여시 연간 2천7백만원(퇴직금 포함)의 전임연구인력 수당 및 수당의 최대 9% 한도 내에서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를 각각 인건비에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1.5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 박사수료생(ABD, All but Dissertation)은 국내에서 박사과정(course work)을 이수한후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자로서,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으로 6개월 이상 참여해야함

##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SSK소/중형 동일)
  - 연구자 신청 : 2013. 5. 16(목), 14:00 ~ 5. 22(수), 18:00까지
  - 기 관 확 인 : 2013. 5. 23(목), 14:00 ~ 5. 2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3. 신청절차



###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신청자는 재단 홈페이지 빠른메뉴 →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 KRI 정보 갱신 시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신청 전 사전 확인). 정보 공개 여부는 반드시 공개로 설정
  -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www.krm.or.kr](http://www.krm.or.kr))를 통해 기선정 연구과제 정보(연구목표, 기대효과 등) 조회가 가능함
- 2) 온라인 신청 시 연구계획서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글」, 「MS워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의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 3) '연구장비' 신청 시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를 통해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구입년도, 기기명, 기기사양, 보유수량)을 파악하여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4) 신청과제의 평가분야 및 담당 학문단은 연구분야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료실→연구분야분류표→학술연구분야
  -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으로 문의

## 나. 온라인 신청

- 1)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2) 신청자의 대표업적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실적 중 3편을 선택하여야 함
  -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3) '연구장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기기명, 기기사양, 구입년도, 보유수량) 및 사유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PC,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프린터 등의 구입 사양
- 4) 연구비 산출시 특정 세부항목이 전체 연구비의 70%를 초과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야 함
- 5)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6)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제번호는 신청 마감 이후에 일괄적으로 부여됨(접수번호와 과제번호는 다름)

-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기 전 『인쇄-미리보기』에서 1쪽씩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함(『인쇄-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바꾼 후 저장)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붙임12]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연구계획서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탑재하여야 함

## 다. 온라인 신청 후

### 1) 신청자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입력내용(계획서 및 관련자료 일체)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

###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

- 신청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 1부를 제출받고 기한 내에 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 함(신청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4. 신청 및 참여제한

### □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하반기 공모 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
  - ※ 학문후속세대(시간강사)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토대연구지원, 대학중점연구소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인문한국(HK)지원,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기초학문자료센터 중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 공동연구원은 신규 신청과제수와 기참여과제수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SSK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음
-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13.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 수행 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



## □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상기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 기존 학술지원사업(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지원과제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3.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4.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정책주제형 대학중점연구소과제 포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우수논문지원, 우수학자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중 저술성과확산지원),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인문주간 및 강좌 지원의 과제(시민인문강좌, 상설인문강좌),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산학협력형, 융합연구총괄센터), 사회과학연구지원(SSK네트워킹지원, SSK-성과홍보확산, SSK-정부정책연계지원) 등은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참여제한은 연구과제 신청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감안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불가

\* 연구비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

- 현재 2010~12년 선정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또는 사회과학 지정주제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일부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중형 신규과제에 한정)

###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 매년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될 시 차년도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 다년도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 지원해 오던 사업은 계속 지원하되, '12년 이후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의 기간 중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될 경우에는 사업 지원 중단 가능

## 1. 평가단계(소형 및 중형 동일)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재단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면담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 면담평가는 선정과제의 1.5배수 이내 선정함 ※ 평가배점 : 패널평가(70%) + 면담평가(30%)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2.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4 참조]

## 3. 평가절차 및 내용

###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 나. 제 2 단계 : 전공평가

- 평가방법 : 패널평가 + 면담평가
  - 패널/면담평가 : 연구계획 집단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
- 평가내용 :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4] 참조

### 다. 제 3 단계 : 종합평가

- 평가주관 : 종합평가단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4.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 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 협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연구인력 확보 등 신청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중형연구단 기준)

## V

## 연구비 관리

### 1. 연구비 지급

#### □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 다년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단계)평가 후 지원 결정된 연구비 지급

### 2. 연구비 관리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 관리

## 1. 평가유형 및 평가내용

### □ 1차년도 연차평가

- 평가시기 : 연차보고서 온라인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 평가지표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1단계	전공평가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 접수서류
  - 연차보고서(연구재단 소정양식) 및 연구성과물(학술논문, Working paper 등)
- 평가점수 및 조치
  - 1차년도 연차평가의 경우 Pass/Fail의 평가개념이 아닌 컨설팅 개념(점수부여 없음)의 점검으로 실시함
  - ※ 1차년도의 경우 연차평가 종합심사 없음
- 평가결과 활용 :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 2차년도 연차평가

- 평가시기 : 연차보고서 온라인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 평가지표(I 그룹 / II그룹) 선택 가능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1단계	전공평가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 필요시 면담평가도 병행 할 수 있음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 I그룹(연구수행) 방식의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 5참조

※ II그룹(DB구축) 방식의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 6참조

○ 접수방법

- 신청시 I 그룹(연구수행), II 그룹(DB구축)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룹 구분은 연구팀이 자율 선택(그룹별 별도 평가항목 및 배점 부여가능)

○ 접수서류

- 연차보고서(연구재단 소정양식) 및 연구성과물(학술논문, Working paper 등)
- 2차년도 연차평가는 2년간 연구업적을 통합하여 평가함

※ 필요시 현장평가 결과를 심사평가결과에 반영 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활용 :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평가접수 및 조치

- 평가결과 하위 20% 내외 탈락
- SSK연수생의 해외연수 신청에 따른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계속과제 연차탈락비율을 조정하되 최소 하위 10% 내외는 강제탈락
- ※ 강제탈락 시 발생하는 잔여예산은 신규연구팀 선정 예산으로 활용
- 소형 3년차 ABD 해외연수비용은 연차평가 결과 지원이 중단된 연구팀의 예산으로 증액되므로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70점 이상 계속지원, 70점 미만 지원중단

## □ 중형 진입 단계평가

- 평가시기 : 단계보고서 온라인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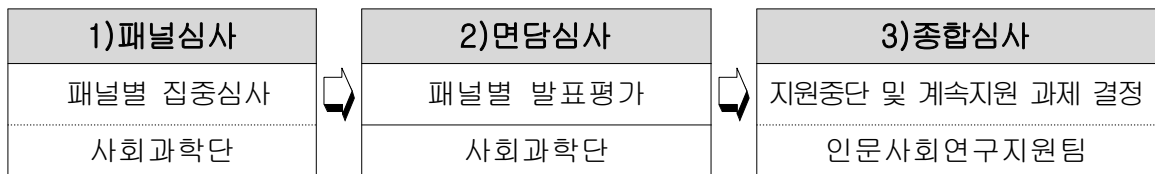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계획 대비 연구업적(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 심사 ※ 필요시 연구팀 공동발표 및 토론을 병행할 수 있음	PM (필요시외부 전문가)
		면담평가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I그룹(연구수행) 방식의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 7참조

※ II그룹(DB구축) 방식의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 8참조

### ○ 접수방법

- 신청시 I 그룹(연구수행), II 그룹(DB구축)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룹 구분은 연구팀이 자율 선택(그룹별 별도 평가항목 및 배점 부여가능)



### ○ 접수서류

- 단계보고서(연구재단 소정양식) 및 연구성과물(학술논문, Working paper 등)
- 단계평가는 3년간 연구업적을 통합하여 평가함

※ 필요시 현장평가 결과를 심사평가결과에 반영 할 수 있음

### ○ 평가결과 활용 :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 평가점수 및 조치

- 평가결과 하위 50% 내외 탈락 가능(모든 팀을 단독성장팀으로 가정 시)

※ 신청 시 2개 이상의 연구팀이 연합하여 1개의 연구단을 구성하거나, 1개 연구팀 단독으로 연구진을 추가 보강하여 연구단을 구성할 수 있음 (연합형과 단독형 그룹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음)

- 70점 이상 계속지원, 70점 미만 지원중단

## 2. 보고서 제출

### 가. 연차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차별 연구종료 2개월 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 2013년 계속과제 제출 대상

'11년 선정	'12년 선정	계
71과제	43과제	114과제

### 나. 단계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단계별 연구종료 2개월 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단계보고서(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 2013년 계속과제 제출 대상

'10년 선정	계
83과제	83과제

### 다.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종료연구팀에 한정함)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2013년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

'10년 선정	계
9과제	9과제

- 제출자료
  -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파일 탑재)
  - 연구요약문(국·영문)

※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서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
-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라. 연구비 정산 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소속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온라인 입력

## 마.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 제출시기 :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급, A&HCI급·SSCI급, SCOPUS급)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 요구수준은 단순 양적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고려(공동저자수, SSCI등재여부, 전문우수학술저서여부 등)한 비율방식으로 환산)



※ 상세비율표 및 요구 사항은 붙임9 자료 참고

구분	2년	3년	비고
SSK 소형 연구팀	해당년수 × 200%이상		※ 환산기준 예시 : 1인저자 1편 = 100% (재단등록학술지 기준), 1인당 SSCI 논문 1편 = 200% 등

구분	2년	3년	비고
SSK 중형 연구단	해당년수 × 400%이상		※ 환산기준 예시 : 1인저자 1편 = 100% (재단등록학술지 기준), 1인당 SSCI 논문 1편 = 200% 등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과제번호)

※ 연구결과발표물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함

**바.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

○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물 관련 의무 미이행 과제는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처리

※ 공동연구의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연구책임자와 미제출자 제재 조치

### 3. 연구성과 관리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 1. 간접비 지급

- 신규 및 계속 과제외의 경우 협약시점 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단계평가 과제외의 경우 단계평가 시점의 고시율 적용

## 2.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 '14.12.31.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11.12.7. 발표)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위해 사업별로 신청 자격 및 결과물 제출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기준을 '14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로 변경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

## 3. 기타 참고사항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 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문 의 처

###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http://www.nrf.re.kr))

####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 042-869-6208, 6207, 6134, 6307

####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법정상경분야 : 042-869-6301 ~ 2

- 사회과학분야 : 042-869-6083 ~ 4

####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인건비	<b>1. 연구보조원</b> : 연구에 참여하는 - (전문)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학사과정생 및 학사급 연구원: 월 50만원 이내 -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이내 - 박사과정생: 월 150만원이내 *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은 참여기간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함. 다만,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별표2"를 준용할 수 있음
		<b>2 전임연구인력 수당</b> * 교육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전임연구인력(연 2,700만원 이상/ 1인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 및 퇴직금 포함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등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국내외 정보 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수집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교열비, 번역감수,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b>여비는</b>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계상 가능 -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집행가능하며, 미집행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 수당	○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b>인건비를 계상한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b>	-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 1인 연480만원이내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Mega-Agenda		Semi-Topic 및 개요 설명
1. 지역 사회 발전	Semi Topic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 / 지역격차 극복 방안</li> <li>- 중앙-지방, 지방-지방정부간 협력</li> <li>- 지방재정 효율화, 재정관리역량 확충</li> <li>- 지방정부 복지 행정</li> <li>- 지역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li> </ul>
2. 복지와 행복	Semi Topic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아동·노인·차상위 빈곤계층) 복지</li> <li>- 복지선진화, 복지지표개발, 복지재정</li> <li>- 저출산·고령화관련 공공서비스 및 공공정책</li> <li>- 보육관련 공공서비스 및 공공정책</li> <li>- 노동시장 고용안정과 일자리(녹색, 좋은, 여성, 노인일자리) 창출</li> <li>- 노동인구변화, 인적자원 유연성, 일자리 양극화</li> <li>- 지역간 복지 형평성, 빈곤격차 등</li> </ul>
3. 지역다양성과 사회통합	Semi Topic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다문화 공동체</li> <li>- 소수자의 이주법제 마련, 이주와 사회통합, 형평성, 차별</li> <li>- 지역균형발전 / 지역간 갈등 극복방안</li> <li>- 통합 갈등·범죄관리시스템 구축</li> <li>-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li> <li>- 지역문화축제, 다양성, 지역간 문화격차, 지역 정체성 등</li> </ul>
4. 교육 발전	Semi Topic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교육 발전·강화 / 사교육 과잉, 가계소득과 사교육</li> <li>- 고등교육부담 문제(대학 반값 등록금 등)</li> <li>- 글로벌 교육서비스 강화 / 국제적(글로벌) 인재 육성 및 확보</li> <li>-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교육체제(패러다임) 변화</li> <li>- 다문화 교육복지강화 / 지역간, 다문화 교육격차 해소</li> <li>- 창의교육, 선택가능 교육(혁신·대안학교)</li> <li>- 교사 역량 및 협력, 교육력 제고 등</li> </ul>
5. 융합적 학문과 기술	Semi Topic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통섭</li> <li>- 융합 기술(IT, BT, NT, ET) / 미래의 새로운 학문분야</li> <li>-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학문 및 기술</li> <li>- 기술발전과 지역격차</li> <li>- 과학기술발전과 도덕적 문제</li> <li>- 융합적 학문과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li> </ul>
6. 국제관계와 한반도 미래	Semi Topic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대비 교육 / 통일 재원 및 통일 인프라 구축</li> <li>- 남북관계 구축, 남북대화 공동기구, 남북경제 협력, 공동체</li> <li>-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국가정체성, 국가이념 의식</li> <li>- 한국 개발경험의 지식화 및 글로벌 확산</li> <li>-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성격·인지도·지지도 등</li> </ul>
7.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Semi Topic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li> <li>-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 새로운 일자리 창출</li> <li>-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li> <li>-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li> <li>-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화</li> <li>- 지역통합, 소외지역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 등</li> </ul>

Mega-Agenda		Semi-Topic 및 개요 설명
1. 지방화와 상생 발전	Semi Topic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동체와 주민참여 / 소외지역 상생발전</li> <li>- 지역자산과 지역 정체성</li> <li>-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사회 신공동체</li> <li>- 지역 공유자원 보전 및 관리</li> <li>- 지방재정 효율화, 재정관리역량 확충</li> <li>- 지역격차 극복 방안 / 지방정부 복지 행정 등</li> </ul>
2. 삶의 질과 국민 행복	Semi Topic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아동·노인·차상위 빈곤계층) 관련 복지방안, 법제정</li> <li>- 복지선진화, 복지지표개발, 복지재정</li> <li>-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마련</li> <li>- 저출산·고령화관련 공공서비스 및 공공정책</li> <li>- 여성 경제활동 환경개선, 노동시장 내 양성평등</li> <li>- 노동시장 고용안정과 일자리(녹색, 좋은, 여성, 노인일자리) 창출</li> <li>- 지역간 복지 형평성, 빈곤격차 등</li> </ul>
3. 미래지향적 교육/연구	Semi Topic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교육 발전·강화</li> <li>- 창의·혁신교육과 인재 육성</li> <li>- 고등교육 부담경감 (대학 반값 등록금)</li> <li>- 저출산·고령화·고학력에 따른 교육체제(패러다임) 변화</li> <li>- 다문화 교육복지강화</li> <li>- 네트워크·유비쿼터스 사회의 교육</li> <li>- 교사 역량 및 협력, 교육력 제고 등</li> </ul>
4. 창조경제와 국가경쟁력	Semi Topic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li> <li>-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 사회적 기업</li> <li>- 창조경제와 고용창출</li> <li>-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li> <li>-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화</li> <li>- 지역통합, 소외지역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li> <li>-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가경쟁력 등</li> </ul>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소형/중형과제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적합성 (20)	장기사업으로서의 적합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집단연구로서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li> </ul>	
	아젠다와의 적합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SK 아젠다와 연구주제의 적합성</li> </ul>	
연구계획 (35)	연구계획의 우수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li> <li>▪ 과제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li> <li>▪ 연구성과의 기대 및 파급효과</li> <li>▪ 연구계획의 체계성</li> <li>▪ 학제적 분과 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및 의지</li> </ul>	
연구진 구성 (25)	연구집단의 우수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li> <li>▪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핵심연구원의 연구능력</li> <li>▪ 연구진의 다양성</li> <li>▪ 대학간 연계수준의 타당성</li> </ul>	
사업추진 (20)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합리성</li> <li>▪ 사업단 운영계획의 체계성</li> <li>▪ 연구활동과 예산편성의 적절성</li> </ul>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연차평가 : 1 그룹(연구수행)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항목 설명 및 주안점																										
목표 달성도 (80)	연구 성과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업적 : 정량평가</li> <li>연구주제:관련 성과의 수준: 정성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SK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논문만 게재 실적으로 인정</li> <li>※ 연구개시후 6개월 이후 실적만 인정함</li> <li>※ 2013.6.30 이전 게재가 확정되고 게재확정증명서 첨부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li> <li>※ 연구개시후 6개월 이내에 투고하고 2013.6.30 이전에 게재된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함</li> <li>※ 논문실적은 국제적수준학술지(A&amp;HCI, SSCI, SCOPUS 급 등)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기타 국제저널 논문지로 구분하여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논문제목</th> <th>게재지</th> <th>저자(수)</th> <th>학술지종류</th> <th>SSK연관성</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역)서 실적은 SSK사업과 연관 있는 저서, 역서, 기타 발간물만 인정하며,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제목</th> <th>저자(수)</th> <th>출판사</th> <th>SSK연관성</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순번	논문제목	게재지	저자(수)	학술지종류	SSK연관성	비고								순번	제목	저자(수)	출판사	SSK연관성	비고						
	순번	논문제목	게재지	저자(수)	학술지종류	SSK연관성	비고																						
순번	제목	저자(수)	출판사	SSK연관성	비고																								
연구 활동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자외의 국내외 활동실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연구팀의 국내외 학술활동 내역</li> <li>국가·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 정도(정부 정책과의 연계 노력, 연구 성과 발표 등)</li> <li>SSK사업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소통 내역(강좌, 홈페이지 운영, 학술포럼, 언론보도 노력, 기타 학술활동 등)</li> <li>Working paper 및 연구보조원의 기타 연구실적 등</li> <li>※ SSK연구팀간 네트워크 활동을 제외한 국내외 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서술</li> </ul>																											
네트워크 참여 역할 및 의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팀간의 네트워크 활동 내역 및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SK네트워크사업단에서 주관한 분과별 심포지엄 활동 내역</li> <li>타(他) SSK연구팀간의 개별 네트워크 활동 내역</li> <li>※ 심포지엄 및 기타 네트워크 참여 횟수 뿐 아니라 학제적·융합적 연구 관점에서 연구팀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서술</li> <li>※ SSK성과관리시스템(<a href="http://ssk.nrf.re.kr">http://ssk.nrf.re.kr</a>)에 업로드된 타 SSK연구팀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해당연구팀의 연구방향 및 방법론 적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서술</li> </ul>																											
향후 계획 (20)	차년도 연구 계획(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연구계획</li> <li>향후 활동 사업계획</li> <li>인력활용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li> <li>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li> <li>연구팀의 연구방향 및 인력활용 계획 등</li> </ul>																										

※ 1차년도 연차평가는 별도의 점수 부여 없으며, 지표선택은 2차년도 연차평가부터 가능(1차년도 연차평가는 모두 1그룹(연구수행)의 평가지표로 진행함)

**붙임6**

**심사항목 및 배점**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연차평가 : II 그룹(DB구축)**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항목 설명 및 주안점																										
목표 달성도 (80)	연구 성과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업적 : 정량평가</li> <li>연구주제:관련 성과의 수준: 정성평가</li> <li>DB데이터의 품질</li> <li>DB서비스의 품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SK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논문만 게재 실적으로 인정</li> <li>DB(Data Base)는 연구에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자료의 집합을 총칭함(설문,문헌,통계조사 등의 양적/질적 자료)</li> <li>※ 연구개시후 6개월 이후 실적만 인정함</li> <li>※ 2013.6.30 이전 게재가 확정되고 게재확정증명서 첨부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li> <li>※ 연구개시후 6개월 이내에 투고하고 2013.6.30 이전에 게재된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함</li> <li>※ 논문실적은 국제적수준학술지(A&amp;HCI, SSCI, SCOPUS 급 등)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기타 국제저널 논문지로 구분하여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논문제목</th> <th>게재지</th> <th>저자(수)</th> <th>학술지종류</th> <th>SSK연관성</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 저(역)서 실적은 SSK사업과 연관 있는 저서, 역서, 기타 발간물만 인정하며,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제목</th> <th>저자(수)</th> <th>출판사</th> <th>SSK연관성</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순번	논문제목	게재지	저자(수)	학술지종류	SSK연관성	비고								순번	제목	저자(수)	출판사	SSK연관성	비고						
	순번	논문제목	게재지	저자(수)	학술지종류	SSK연관성	비고																						
순번	제목	저자(수)	출판사	SSK연관성	비고																								
연구 활동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자의 국내외 활동실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연구팀의 국내외 학술활동 내역</li> <li>국가·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 정도(정부 정책과의 연계 노력, 연구 성과 발표 등)</li> <li>SSK사업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소통 내역(강좌, 홈페이지 운영, 학술포럼, 언론보도 노력, 기타 학술활동 등)</li> <li>Working paper 및 연구보조원의 기타 연구실적 등</li> <li>※ SSK연구팀간 네트워크 활동을 제외한 국내외 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서술</li> </ul>																											
네트워크 참여 역할 및 의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팀간의 네트워크 활동 내역 및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SK네트워킹사업단에서 주관한 분과별 심포지엄 활동 내역</li> <li>타(他) SSK연구팀간의 개별 네트워크 활동 내역</li> <li>※ 심포지엄 및 기타 네트워크 참여 횟수 뿐 아니라 학제적·융합적 연구 관점에서 연구팀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서술</li> <li>※ SSK성과관리시스템(<a href="http://ssk.nrf.re.kr">http://ssk.nrf.re.kr</a>)에 업로드된 타 SSK연구팀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해당연구팀의 연구방향 및 방법론 적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서술</li> </ul>																											
향후 계획 (20)	차년도 연구 계획(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연구계획</li> <li>향후 활동 사업계획</li> <li>인력활용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li> <li>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li> <li>연구팀의 연구방향 및 인력활용 계획 등</li> </ul>																										

※ DB데이터 및 DB서비스 품질은 DB구축 작업의 진척에 따라 비중을 조정할 수 있음

**붙임7**

**심사항목 및 배점**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단계평가 : I 그룹(연구수행)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연구 성과 (50)	연구성과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업적 : 정량평가</li> <li>▪ 연구주제 관련 성과의 수준: 정성평가</li> </ul>	
	연구활동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의 국내외 활동실적</li> <li>▪ 연구팀간의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역할</li> <li>▪ 국가·사회적 기여 및 활용</li> </ul>	
연구 계획 (50)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우수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집단연구로서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li> <li>▪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li> <li>▪ 과제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li> <li>▪ 연구성과의 기대 및 파급효과</li> <li>▪ 연구계획의 체계성</li> <li>▪ 학제적 분과 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및 의지</li> </ul>	
	연구집단의 우수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의 연구능력</li> <li>▪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핵심연구원의 연구능력</li> <li>▪ 연구집단의 다양성</li> <li>▪ 대학간 연계수준의 타당성</li> </ul>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합리성</li> <li>▪ 연구사업단(연구센터) 운영계획의 체계성</li> <li>▪ 연구활동과 예산편성의 적절성</li> </ul>	

**붙임8**

**심사항목 및 배점**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단계평가 : II 그룹(DB구축)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연구 성과 (50)	연구성과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업적 : 정량평가</li> <li>▪ 연구주제 관련 성과의 수준: 정성평가</li> <li>▪ DB데이터의 품질</li> <li>▪ DB서비스의 품질</li> </ul>	
	연구활동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의 국내외 활동실적</li> <li>▪ 연구팀간의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역할</li> <li>▪ 국가·사회적 기여 및 활용</li> </ul>	
연구 계획 (50)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우수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집단연구로서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li> <li>▪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li> <li>▪ 과제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li> <li>▪ 연구성과의 기대 및 파급효과</li> <li>▪ 연구계획의 체계성</li> <li>▪ 학제적 분과 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및 의지</li> </ul>	
	연구집단의 우수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의 연구능력</li> <li>▪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핵심연구원의 연구능력</li> <li>▪ 연구집단의 다양성</li> <li>▪ 대학간 연계수준의 타당성</li> </ul>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합리성</li> <li>▪ 연구사업단(연구센터) 운영계획의 체계성</li> <li>▪ 연구활동과 예산편성의 적절성</li> </ul>	

※ DB데이터 및 DB서비스 품질은 DB구축 작업의 진척에 따라 비중을 조정할 수 있음

SSK 최종연구결과물 산정 비율표

구분	인정범위	저자수	1건당 인정편수	인정율	환산결과
학술논문	SCI, SSCI, A&HCI 학술지	1인	2	100%	200%
		2인	2	70%	140%
		3인	2	50%	100%
		4인	2	30%	60%
		5인 이상	2	25%	50%
	SCIE, SCOPUS 학술지	1인	1.5	100%	150%
		2인	1.5	70%	105%
		3인	1.5	50%	75%
		4인	1.5	30%	45%
		5인 이상	1.5	25%	38%
	한국연구재단 등록학술지*	1인	1	100%	100%
		2인	1	70%	70%
		3인	1	50%	50%
		4인	1	30%	30%
		5인 이상	1	25%	25%
	* 기존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				
학술저서	교과서 성격의 저서는 제외되며, 독창적인 이론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에 한함	1인	2	100%	200%
		2인	2	70%	140%
		3인	2	50%	100%
		4인	2	30%	60%
		5인 이상	2	25%	50%
	* ISBN이 수록된 출판물에 한정 * 단순한서평, 학회지원고, 저서의 개정증보판은 제외				

ABD해외연수 참여 여부선택	ABD 연수 참여	ABD 연수 불참

# 연구 계획서

## <2013년도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연구의제 (Agenda)	* 지정주제 : 7대 Top-Down Agenda 중 명시				
연구규모  ※ ABD 해외연수를 진행할 경우 소형 3년차에 2천5백만원 추가 신청 요망 (최대 1억 2.5천만원 까지 신청 가능, 간접비 제외)	연구기간	3년	2013. 9. 1 ~ 2016. 8. 31.		
	신청 연구 비	소형 1차년도	천원	참여인원 (연구보조원 제외)	총 명 (전임연구인력: 명)
		소형 2차년도	천원		
		소형 3차년도	천원		
		계	천원		
연구과제	국 문	소형단계(3년)동안 진행할 연구주제(10년 장기주제의 세부주제)			
	영 문				

### <목차>

- I. 연구계획 ..... ○
  - 1. 연구의 목적 ..... ○
  - 2. 연구방법 및 내용 ..... ○
  - 3. 결과 활용방안 ..... ○
  - 4. 기타사항 ..... ○
  - 5. 참고문헌 ..... ○
- II. 연구추진계획 ..... ○
  - 1.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
  - 2. 연구수행일정 ..... ○
- III. 대표업적 ..... ○

# I. 연구계획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 연구계획은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하시어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학문발전 공헌도, 결과 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목차”를 반드시 포함함-[총괄 앞장]과 [I.연구계획] 사이에 “목차” 배치)
- ※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 연구계획서(연구계획, 참고문헌 목록,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A4용지 25매 이내에 작성해야 함. 단, 대표업적은 25매에 포함되지 않음(25페이지를 넘는 경우 감점 처리 될 수 있음)
-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
- ※ 연구과제의 평가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됨.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및 연구보조원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인이름을 삭제할 필요는 없음

## 1. 연구의 목적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장기집단연구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0년 장기 연구를 위한 주제 설정의 타당성

## 2. 연구방법 및 내용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장기 목적 달성을 위한 단계별(소형, 중형, 대형) 연구계획
- 단계별 목적 달성을 위한 연차별 연구계획(초기 3년은 연차별 계획 상세하게 작성하며, 중·장기 계획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국제협력계획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연구수행일정,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 3. 결과 활용방안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등 인력양성 방안
- 연구결과의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 4. 기타사항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외출장의 필요성 및 연구비 집행계획 등</li><li>-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li></ul> |
|----------------------------------------------------------------------------------------------------------|

#### 5. 참고문헌



## Ⅱ. 연구추진계획

### 1.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을 기술)

### 2. 연구수행일정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

< 예시 >

1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3. 9		
10		
...		
...		
~2014. 8		

2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4. 9		
10		
...		
...		
~2015. 8		

3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5. 9		
10		
...		
...		
~2016. 8		

※ 연구개시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3.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자별 연구수행계획을 기술)

- ☞ 향후 연구수행결과에 따른 책무는 모든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가 동일하므로 공동연구원별로 실질적인 역할분담내역 및 연구수행계획을 기술함. 연구책임자도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관리의 기능만 담당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이름 등)는 기재하지 않음.

< 예시 >

참여형태 구분		참여자 구분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연구책임자		갑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 연구원	갑		
		을 병...		
	전임 연구인력	갑		
		을 병...		

### 4. 연구비 규모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타당성 등 기술)

### 5.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학술지

### Ⅲ. 대표업적

#### 연구자별 대표연구업적 목록

참여 구분	연번	업적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출판 연월 (게재권호)	저자 수	저자구분
			학술지명(출판사명)			
책임	1	논문			명	
책임	2	저서			명	
책임	3				명	
갑	1				명	
갑	2				명	
갑	3				명	
을	1				명	
을	2				명	
을	3				명	
...	...				명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과 일치하도록 목록 작성

※ 참여구분 : 연구책임자는 책임, 일반공동연구원의 참여구분은 갑, 을, 병 등으로 표시

※ 연번 : 연구자별로 각각 연번 작성

※ 업적구분 : 논문/저서/역서/국제특허 중 택1 기재

※ 저자구분 :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표기(주저자, 교신저자가 중복될 경우 주저자로 표기)

# 연구업적 요약문

요약문 번호	참여구분-연번	업적 구분	논문( ) 저서( ) 역서( ) 국제특허(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학술지명(출판사명)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대표업적에 대하여 연구자별로 각각 작성함
- ※ 요약문 번호는 대표연구업적목록에 기재한 참여구분과 연번 기재
-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않음
- ※ 참여구분 명기 방법 (연구업적별 작성)  
예) 연구책임자: 책임-1, 책임-2. / 일반공동연구자: 갑-1, 갑-2 / 을-1, 을-2 / ...

ABD해외연수 참여 여부선택	ABD 연수 참여	ABD 연수 불참

# 연구 계획서

## <2013년도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연구의제 (Agenda)	* 지정주제 : 4대 Top-Down Agenda 중 명시				
<b>연구규모</b> ※ ABD 해외연수를 진행할 경우 중형 5년차에 5천만원 추가 신청 요망 (최대 2억 8천만원 까지 신청 가능, 간접비 제외)	연구기간	3년	2013. 9. 1 ~ 2016. 8. 31.		
	신청 연구 비	중형 1차년도	천원	참여인원 (연구보조원 제외)	총 명 (전임연구인력: 명)
		중형 2차년도	천원		
		중형 3차년도	천원		
		계	천원		
연구과제	국 문	중형단계(3년)동안 진행할 연구주제(7년 장기주제의 세부주제)			
	영 문				

### <목차>

- I. 연구계획 ..... ○
  - 1. 연구의 목적 ..... ○
  - 2. 연구방법 및 내용 ..... ○
  - 3. 결과 활용방안 ..... ○
  - 4. 기타사항 ..... ○
  - 5. 참고문헌 ..... ○
  - 6. 연구소 관련 사항 ..... ○
  
- II. 연구추진계획 ..... ○
  - 1.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
  - 2. 연구수행일정 ..... ○
  
- III. 대표업적 ..... ○

# I. 연구계획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 연구계획은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하시어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학문발전 공헌도, 결과 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목차”를 반드시 포함함-[총괄 앞장]과 [I.연구계획] 사이에 “목차” 배치)
- ※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 연구계획서(연구계획, 참고문헌 목록,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A4용지 30매 이내에 작성해야 함. 단, 대표업적은 30매에 포함되지 않음(30페이지를 넘는 경우 감점 처리 될 수 있음)
-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
- ※ 연구과제의 평가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됨.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및 연구보조원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인이름을 삭제할 필요는 없음

## 1. 연구의 목적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장기집단연구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
- 7년 장기 연구를 위한 주제 설정의 타당성

## 2. 연구방법 및 내용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장기 목적 달성을 위한 단계별(중형, 대형) 연구계획
- 단계별 목적 달성을 위한 연차별 연구계획(초기 3년은 연차별 계획 상세하게 작성하며, 중·장기 계획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국제협력계획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연구수행일정,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 3. 결과 활용방안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등 인력양성 방안
- 연구결과의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 4. 기타사항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해외출장의 필요성 및 연구비 집행계획 등
-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 교내 대응자금(필수 아님) 투입 관련 등

#### 5. 참고문헌

#### 6. 연구소 관련 사항

※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 신청연구소 운영 실적(연구비 수주 및 학술대회 개최, 간행물 발간 등)

## Ⅱ. 연구추진계획

### 1.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을 기술)

### 2. 연구수행일정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

< 예시 >

1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3. 9		
10		
...		
...		
~2014. 8		

2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4. 9		
10		
...		
...		
~2015. 8		

3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5. 9		
10		
...		
...		
~2016. 8		

※ 연구개시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3.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자별 연구수행계획을 기술)

- ☞ 향후 연구수행결과에 따른 책무는 모든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가 동일하므로 공동연구원별로 실질적인 역할분담내역 및 연구수행계획을 기술함. 연구책임자도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관리의 기능만 담당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이름 등)는 기재하지 않음.

< 예시 >

참여형태 구분		참여자 구분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연구책임자		갑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 연구원	갑		
		을 병...		
	전임 연구인력	갑		
		을 병...		

### 4. 연구비 규모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타당성 등 기술)

### 5.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학술지

### Ⅲ. 대표업적

#### 연구자별 대표연구업적 목록

참여 구분	연번	업적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출판 연월 (게재권호)	저자 수	저자구분
			학술지명(출판사명)			
책임	1	논문			명	
책임	2	저서			명	
책임	3				명	
갑	1				명	
갑	2				명	
갑	3				명	
을	1				명	
을	2				명	
을	3				명	
...	...				명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과 일치하도록 목록 작성

※ 참여구분 : 연구책임자는 책임, 일반공동연구원의 참여구분은 갑, 을, 병 등으로 표시

※ 연번 : 연구자별로 각각 연번 작성

※ 업적구분 : 논문/저서/역서/국제특허 중 택1 기재

※ 저자구분 :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표기(주저자, 교신저자가 중복될 경우 주저자로 표기)

# 연구업적 요약문

요약문 번호	참여구분-연번	업적 구분	논문( ) 저서( ) 역서( ) 국제특허(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학술지명(출판사명)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대표업적에 대하여 연구자별로 각각 작성함
- ※ 요약문 번호는 대표연구업적목록에 기재한 참여구분과 연번 기재
-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않음
- ※ 참여구분 명기 방법 (연구업적별 작성)  
예) 연구책임자: 책임-1, 책임-2. / 일반공동연구자: 갑-1, 갑-2 / 을-1, 을-2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연구비카드발급을 위해 신한카드에 관련정보가 제공되며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NTIS시스템에 제공됨
- 주민등록번호는 연구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신청년도 2013  
 연구과제명 \_\_\_\_\_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1. 2010~12년 선정 SSK 참여연구자가 2013년 신규 SSK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동일사업內 1과제만 참여할 수 있으며, 2010~12년 선정 SSK사업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계시면 2013년 신규 SSK사업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2. 외국대학 소속의 외국인 연구자가 참여 가능 합니까?

→ 외국대학소속의 외국인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공동연구원 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KRI(한국연구업적통합시스템)에 연구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국내대학의 소속된 외국인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함

3. 하반기 집단연구사업에 몇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하반기 공모 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학문후속세대(시간강사)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토대연구지원, 대학중점연구소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인문한국(HK)지원,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기초학문자료센터 중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신규 신청과제수와 기참여과제수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4. 2013년 현재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인데, 지원가능합니까?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구가 종료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지원가능합니다.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4.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정책주제형 대학중점연구소과제 포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우수논문지원, 우수학자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중 저술성과확산지원),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인문주간 및 강좌 지원의 과제(시민인문강좌, 상설인문강좌),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산학협력형, 융합연구총괄센터), 사회과학연구지원(SSK-네트워킹지원, SSK-성과홍보확산지원, SSK-정부정책연계지원) 등은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5.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의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에 한정됩니까?**

-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는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분류표상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전임교원)만 지원 가능함. 소속학과와 상관없이 KRI(한국연구업적통합시스템) 상에 연구분야가 사회과학분야로 지정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함.
- ※ 인문대학 소속의 연구책임자라도 KRI(한국연구업적통합시스템) 상에 연구분야가 사회과학분야로 지정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함
- ※ 참여연구원중 박사급연구원(월 170만원 이내 인건비 산정)은 참여 불가하며 전임연구인력(연 2700만원 이상 인건비 산정)은 참여 가능함
- ※ 전임연구인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 및 퇴직금을 포함해야 하며, SSK 소형단계에서는 필수 참여 의무 없으나 중형단계는 2명 이상 참여 필수임

**6. 박사수료생(ABD) 해외 연수는 의무사항 인가요?**

- ➔ 소(중)형 3년차에 박사수료생(ABD)을 1년간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으며,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연수대상자가 없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평가에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 박사수료생(ABD) 해외 연수 계획이 있는 팀은 3년차 연구비에 25백만원을 추가해야함

**7. SSK 중형 과제 온라인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 연구소 및 연구진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 ※ 대학부설연구소 : 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의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설립된 연구소, 연구소 명칭이 변경된 연구소, 재단 대학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연구소는 반드시 그 정보와 연구소의 업적 등도 등록 및 갱신하셔야 합니다.

**8. 동일대학, 동일학과 소속만으로 팀 구성을 자제하는 최소요건주의 방식의 의미는?**

- ➔ 동사업이 추구하는 지원방향이 학문간, 대학간, 국가간 팀구성을 통한 창의적, 생산적 연구역량 창출에 있기 때문에 동일대학 동일학과 소속팀을 구성하는 것은 자제 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
- ➔ 동일대학, 동일학과로 구성된 연구팀일지라도 동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시 별도의 감점기준은 없으나, 연구의제 및 목적에 적절하게 연구진을 구성해야 함
- ※ 연구진 구성은 학제간·대학간·국가간의 연구진을 필수적으로 충족하는게 아니라 연구팀의 연구의제와 목적에 맞게 연구진을 구성함을 기본방향으로 함.

**9. 연구팀 구성시 인원제한은 있습니까?**

- 동사업의 소형연구팀에서는 3인 이상의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포함)이 참여해야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4인 이상, 5인 이상 연구팀이라도 신청 가능함.
- ※ 단, 중형연구단은 7인 이상의 참여연구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10. SSK사업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연구자는 동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동사업의 신청요강을 참고하시면 ‘인문사회과학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혹은 해당기관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연구자’로 명시되어 있기에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연구자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은 가능함. 그러나 반드시 참여연구원 중 1인 이상은 소속기관에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함.
- ※ 중형 및 대형단계 진입시, 연구책임자 소속의 거점대학에 전담연구 시설을 설치하기에 연구책임자는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신청함을 권장함

**11. 연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 연구계획서는 A4 용지 소형25매(중형30매) 이내로 작성해야 함.(대표엽적 미포함)
- 연구계획서 편집 기준은 A4용지 기준으로, (아래한글 작성시) 제목 15pt, 소제목 13pt, 본문 11pt, 줄간격 160%, 좌우여백(20), 상하여백(10), 머리말/꼬리말(10)

**12. 연구계획서 표지중 ‘연구의제’ 와 ‘연구과제명’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우선, 연구계획서 양식의 연구의제(Agenda)는 10년간 연구진행을 하는데 있어 장기적, 거시적 쟁점의 연구의제를 의미하며, 연구과제는 단계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 연구주제를 의미함.

**13. 최종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기준은?**

- 최종연구결과발표물은 연차 및 단계 평가시 종료된 연구팀에 한해 종료 후 2년 이내 최소한 연간 소형200%(중형400%) 이상의 논문을 제출해야함.(세부내역 신청요강 참고)

구분	2년	3년	비고
SSK 소형 연구팀	해당년수 × 200%이상		※ 환산기준 예시 : 1인저자 1편 = 100%(재단등록 학술지 기준), 1인당 SSCI 논문 1편 = 200% 등

구분	2년	3년	비고
SSK 중형 연구단	해당년수 × 400%이상		※ 환산기준 예시 : 1인저자 1편 = 100%(재단등록 학술지 기준), 1인당 SSCI 논문 1편 = 200% 등

**14. 연구진들은 신청 전까지 모두 확보되어야 합니까?**

- ➔ 연구소장(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은 신청 전에 확보되어야하며, 전임연구 인력은 대학에서 반드시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선정 후 3개월 간의 확보 기간을 드리오니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15. 온라인 신청시 대표업적 선택과 계획서상의 대표업적(연구업적요약문)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 온라인 신청시 대표업적은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자(전임연구인력 제외)가 “한국연구업적정보시스템(KRI)”에 등록된 연구 업적 중 3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대표업적은 연구계획서 내의 대표연구업적요약문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16. 연구비로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 ➔ 연구비 신청시 직접비 항목 내에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이 있으며, 동 세목에는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신청요강에 첨부된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PC,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프린터 등의 구입 지양

**17. 외국인 연구보조원을 등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연구보조원은 신청 대학 외에 국내 타 대학 학생 및 국내 대학 소속인 외국인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온라인 신청시 해당 연구보조원의 주민번호 입력란에 남자일 경우 “생년월일-100001F“, 여자는 ”생년월일-200001F“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외국인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18. SSK 중형연구단의 행정요원 지원이란 무엇입니까?**

- ➔ 본 사업에서는 선정될 경우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과 연구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대학에서 연구소 행정요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정요원의 인건비는 연구비나 대응자금이 아닌 대학에서 간접비 성격 등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고용 및 근로형태는 대학의 자율입니다.

**19. 간접비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 ➔ 간접비는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금액에 대해 대학별 간접비율을 적용하여 재단에서 별도 지원합니다.

**20. 중형연구단 일반공동연구원의 연구소 소속의 대학교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타 대학 교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까?**

- ➔ 일반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제외)의 경우 연구소 소속의 대학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인사발령 등에 근거하여 연구소에 연구인력(연구위원 등)으로 참여 되어 있는 경우, 타 대학 교원도 일반공동연구원으로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타 대학 교원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소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내 부서서 등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공동연구원이 될 수 있는 박사급 연구원은 전임연구인력이 아닌 연구실적(3편)이 되는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2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양식을 출력하셔서 서명하신 후 스캔하여 파일(PDF, HWP, DOC)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탑재하시면 됩니다.)
- ※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타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김대환 연구원 (042-869-6208), cottm@nrf.re.kr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홍지영 연구원 (042-869-6207), hongji1007@nrf.re.kr